

#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「등기정보시스템운영·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」 개정으로 종전의 등기관 카드 대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개선 사항을 반영함

## 2. 주요내용

- 등기관의 교합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[안 3.가.(2)]

## 3.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.가.(2) 중 “지방법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관카드”를 “「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”로 하고, “등기전산시스템”을 “등기전산정보시스템”으로 하며, “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”을 “등기소장으로부터 부여받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3. 조사·교합업무</p> <p>가. 조사·교합업무의 원칙</p> <p>(1) (생 략)</p> <p>(2) 교합은 <u>지방법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관카드를 사용하여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등기전산 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</u>되 식별부호는 <u>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한다.</u></p>	<p>3. 조사·교합업무</p> <p>가. 조사·교합업무의 원칙</p> <p>(1) (생 략)</p> <p>(2) ----- 「<u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</u>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<u>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----- 등기전산 정보시스템 ----- 등기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-----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 락 처	(02) 3480-6041